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

판 결

사 건 2018가단54663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

원 고 1. A 주식회사

2. 주식회사 B

3. C 주식회사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1. D 주식회사

2. E

3. [redacted]시

피고 3.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18. 12. 5.

판 결 선 고 2019. 1. 9.

주 문

1.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[redacted]시 F 임야 7,774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[redacted]당진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원고 주식회사 B에게 당진시 G 임야 7,756㎡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14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원고 C 주식회사에게 [redacted]시 H 임야 9,075㎡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원고들에게 당진시 I 임야 2,562㎡ 중 각 854/256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 14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원고들의 피고 E,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, 원고들과 피고 E, [redacted]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E 및 피고 [redacted]시는, 원고 A 주식회사(이하 '원고 A'이라고 한다)에게 [redacted]시 F 임야 7,774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원고 주식회사 B(이하 '원고 B'라고 한다)에게 [redacted]시 G 임야 7,756㎡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원고 C 주식회사(이하 '원고 C'이라고 한다)에게 [redacted]시 H 임야 9,075㎡ 및 [redacted]시 J 임야 3,276㎡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원고들에게 당진시 I 임야 2,562㎡ 중 각 854/256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 14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은 주식회사 K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게 당진시 F 임야 7,774㎡(이하 '이 사건 F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원고 B는 소외 회사에게 [redacted]시 G 임야 7,756㎡(이하 '이 사건 G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원고 C은 소외 회사에게 [redacted]시 H 임야 9,075㎡(이하 '이 사건 H 토지'라고 한다) 및 [redacted]시 J 임야 3,276㎡(이하 '이 사건 J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14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당진시 I 임야 2,562㎡(이하 '이 사건 I 토지'라고 한다) 중 각 854/256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3. 24. 접수 제 140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피고 D 주식회사(이하 '피고 D'이라고 한다)는 2015. 5. 26. 이 사건 F, G, H, I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,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은 2018. 6. 20. 가압류등기를, 피고[redacted]시는 2018. 7. 5.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.

사.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(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0111호)를 제기하였고,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18. 7. 4.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2호증(가지번호 포함)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2.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①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F, G, H, I 토지 중 해당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. 3. 24.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② 그런데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F, G, H, I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,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인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F, G, H, I 토지에 관한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나.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3. 피고 E 및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

가.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.

원고들은 2015. 3. 11.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F 내지 I 토지 중 해당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. 3. 24.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로 화해가 성립되었다. 따라서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,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인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F 내지 I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토지에 관한 피고 E의 가압류등기 및 피고 당진시의 압류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E 및 피고[redacted]시는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바(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참조),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F 내지 I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등기 즉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 E 및 피고[redacted]시가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이상, 피고 E 및 피고 [redacted]시는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E 및 피고 [redacted]시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 및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E 및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세창